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2월 9일
(월요일)

동북일보 5면

박문수 의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확정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 없이 지원혜택을 받기를”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 2월 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2월 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어 확정되었다.

이번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기존 조례가 신생아 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



▲ 박문수 의원.

아를 출생한 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해석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대상자녀로 대체하고, 주민들이 지원신청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양

육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발의한 박문수 의원은 “국가기관에서는 저출산과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 없이 지원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작은 부분이라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강북신문 4면

박문수 의원, 조례 3건 발의해 통과시켜

제186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개정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 조례 3건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먼저 박 의원은 제186회 임시회 폐회 중인 1월30일 개최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의안이나 예산안 심의를 할 경우 천재 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자문회 등의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한 경우 의장이 추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은 1월30일 제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조례안이 2월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확정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



박문수 의원

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도록 하며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결산검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결산검사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이밖에 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2월4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어 확정됐다.

개정내용은 기존 조례가 신생아 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해석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대상자녀로 대체하고, 주민들이 지원신청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박문수 의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제186회 임시회 휴회 중인 2일 개최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신생아의 정의규정으로 인해 같은 조례 제5조(지원 신청 등) 제4항의 지원대상자 신청

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해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삭제하고 신생아라는 용어 대신 '대상자녀'로 대체해 출산양육지원금 지

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의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최현규 기자(donstopme@hanmail.net)

'출산양육지원금' 등 조례안 통과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 발의



강북구의회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강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이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됐다.

먼저 '서울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신생아 정의 규정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신청기준이 신생아를 출생한지 28일 이내에 출생 신고한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해석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생아의 개념규정을 대상자녀로 대체하고, 주민들이 지원신청 기간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신청기간을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서 대상자녀

가 태어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어 '서울시 강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평소 박문수 의원은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사후검사이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환류과정으로서 앞으로 결산검사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대상을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확대해 결산검사위원의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으며, 또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

도록 하며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도록 결산검사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현행 결산검사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끝으로 박문수 의원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구의회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의안이나 예산안 심의를 할 경우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기간 내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며, 자문회 등의 위원으로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한 경우 의장이 추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회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유영일 기자